

## 「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」(2022. 1. 1.)

### 1. 지침의 목적 및 적용

- 가. 목적 :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교원의 다양한 활동이 유·초중등 교육활동의 질 제고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
- 나. 적용 대상 : **유·초중등 모든 교원**
- 다. 적용 범위 :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동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, 지침에 없는 내용은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」를 따름
- 라. 적용 세부 기준 : 교원의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에 대한 겹치허가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을 우선 적용

### 2. ‘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’의 정의

- 가. 정의(지침 적용 대상 활동) :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①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(영상, 음성, 사진, 글 등)를 ②인터넷 플랫폼\*의 개인 계정에 탑재하여 ③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
\* (인터넷 플랫폼 예시) 네이버TV, 아프리카TV, 유튜브, 트위치, 팟빵, 네이버 블로그, 다음 브런치 등
- 나. 유의 사항
  -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 ‘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’에 **미포함**
  -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‘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’에 **미포함**

[ 참고 :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영역 ]

콘텐츠 목적	인터넷 플랫폼	
	개인 계정	공공 계정
개인 취미 등 사적 목적 수업 외 직무 관련	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	
학교(유치원) 수업용 (공개 범위 제한)		업무 관련 활동

### 3. 준수할 사항

- ▶ 일반적으로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행동 강령 등은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각별히 유의

- 가.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(「국가공무원법」 제60조)  
※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, 특히 유아·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
- 나.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(「국가공무원법」 제63조)  
※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, 비속어 사용, 혐오사실 유포,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 제작·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